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중심 유통 확대로 지역의 문화 싹틔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매장 운영 없이 납품만 수행하는 업체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지역서점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도서 접근성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제1항제8호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 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경우	8. ----- ----- -----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u> <u>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u> <u>(이하 “지역서점”이라 한</u> <u>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u> <u>법」에 따른 설립요건을</u> <u>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u> <u>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u> <u>(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u> <u>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u> <u>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u> <u>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u>한다</u>. 1. 2. (생략)	<u>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u> ② ----- ----- ----- ----- ----- ----- ----- <u>하며, 제1항제8호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